

# 대만 비관세장벽 이슈

Taiwan Non Tariff Barriers Issue

## 대만, 건강식품의 보건 효능 관련 일부 라벨링 규정 폐지 예정



### 《외포장 명시》 폐지 및 관련 표기 기준을 포함하는 《표시사항》 수정 초안 예고

대만 위생복지부(衛生福利部) 식품약물관리서(食品藥物管理署)은 《건강식품 용기 혹은 외포장의 보건 효능 관련 성분 함유량 명시(健康食品应于产品容器或外包装明显标示保健功效之相关成分含量, 이하 ‘외포장 명시’)》 규정을 폐지한다고 예고함

《외포장 명시》의 건강식품 관련 표시 규정 사항은 《건강식품 검사등록심사 원칙(康食品查驗登記審查原則), 이하 ‘심사 원칙’》의 건강식품 표시 및 어유·홍국 원료 경고 표시 규정 등과 함께 《건강식품 추가 표시사항(健康食品應加標示事項), 이하 ‘표시사항’》 수정 규정에 포함되며, 이에 따라 변경되는 《표시사항》의 수정 내용은 다음 표와 같음

#### ※ 《표시사항》 수정 초안 변경사항 비교

수정 내용	현행 내용
1. (신규) 본 규정은 건강식품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따라 제정함	-
2. (신규) 건강식품은 용기 혹은 외포장에 보건 효능 성분과 함유량을 표시해야 하며, 보건 효능 성분이 검출되지 않을 경우, 해당 식품의 지표성분과 함유량을 표시해야 함	-
3. (신규) 건강식품의 용기 혹은 외포장에는 보건 효능을 다음과 같이 기록함  (1) 건강식품관리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허가증을 받았을 경우, 보건 효능에 관해 문자로 서술한 후, ‘효능은 학리적으로 알 수 있으며 실험으로 확인한 것은 아님’ 추가해야 함 (2) 동물실험으로 보건 효능을 평가한 경우, ‘동물실험 결과로 특정 보건 효능에 도움이 됨’을 표기해야 함	-

수정 내용	현행 내용
<p>4. (수정) 건강식품 용기 혹은 외포장의 표시 주의사항으로는 최소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p> <p>(1) 캡슐 및 알약 형태일 경우 :  a. '본 제품은 약품이 아닌 보건용으로 공급하며, 환자는 여전히 전문 치료를 받아야 함'  b. '권장섭취량에 따라 섭취 및 과량섭취 불가'  (2) 캡슐 및 알약 이외의 형태일 경우 :  '본 제품은 보건용으로 공급하며 권장섭취량에 따라 섭취해야 함'</p>	<p>1. 캡슐 및 알약 형태의 건강식품은 용기 혹은 외포장의 '주의사항'에 다음과 같이 작성함</p> <p>(1) '본 제품은 약품이 아닌 보건용으로 공급하며 환자는 여전히 전문 치료를 받아야 함'이라는 문구  (2) '권장섭취량에 따라 섭취 및 과량섭취 불가'라는 문구</p> <p>2. 캡슐 및 알약 형태 이외의 건강식품은 용기 혹은 외포장의 '주의사항'에 다음과 같이 작성함</p> <p>(1) '본 제품은 보건용으로 공급하며 권장섭취량에 따라 섭취해야 함'라는 문구</p>
<p>5. (신규) 건강식품의 일일 권장섭취량에서 정제 설탕 17g 이상 함유할 경우, '본 제품은 일일 권장섭취량 00g/ml 중 정제 설탕이 00g에 달하므로 열량 섭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를 표기함</p>	-
<p>6. (신규) 건강식품에 어유 원료를 함유하여 경고 표기를 할 경우, 최소한 '영유아, 임산부, 당뇨병 환자, 혹은 항응고제 복용하는 응고제 기능이 부족한 사람은 섭취 전 의사에게 의견을 구해야 함'을 표기함</p>	-
<p>7. (신규) 건강식품에 홍국 원료를 함유하여 경고 표기를 할 경우, 최소한 '본 제품은 저지혈약물 (statin, fibrate 등) 등과 함께 복용할 경우 간, 신장 손상 등이 있을 우려가 있음'을 표기함</p>	-
<p>8. (수정) 규정에 따라 표기한 내용은 글씨 색상과 바탕색을 구분함</p>	<p>3. 주의사항의 글씨는 바탕색과 구분되어야 함</p>
<p>9. (신규) 수입품의 수입일이 본 규정의 발효일 이전일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기간까지 지속적으로 판매할 수 있음</p>	-

### 한국 건강식품 수출 기업, 수정 예고된 건강식품의 라벨링 규정 변화에 주의해야

《외포장 명시》와 《표시사항》은 예고 발표일로부터 60일 간 예고 통지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음. 따라서 대만으로 건강식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외포장 명시》 규정의 폐지로 변경되는 《표시사항》의 시행 동향과 수정 내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변경되는 건강식품의 라벨링 기준에 맞춰 수출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함

#### 출처

식품자신센터(食品资讯中心), 台湾地区預告廢止「健康食品應於產品容器或外包装明顯標示保健功效之相關成分含量」, 2022, 05, 31.  
위생복지부식품약물관리서(衛生福利部食品藥物管理署), 預告廢止「健康食品應於產品容器或外包装明顯標示保健功效之相關成分含量」, 2022, 05, 31.  
위생복지부식품약물관리서(衛生福利部食品藥物管理署), 預告修正「健康食品應加標示事項」草案, 2022, 05, 31.